제1108회 총재공식방문주회 식순

-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12시
- 장 소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

1. 개회선언 및 타종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로타리의 목적 낭독
5. 네 가지 표준 제창
6. 로타리 송 제창 (R-O-T-A-R-Y)
7. 내빈소개
8. 환영사
9. 총재소개
10. 총재연설
11. 총재공식방문 $2 기부금선물 증정
12. 클럽의 목표 꽃다발 전달
13. 성금동의
14. 오찬
15. AKS 재단기부 감사장 전달식
16. 신입회원 입회식
17. 생일축하
18. 사찰보고
19. 공지사항
20. 폐회선언 및 폐회타종

* 기념촬영

공지사항

1. 제1109회 주회 (친선골프대회)
- 일시: 9월 19일(토) 오후1시경
- 장소: 오렌지듄스 영종 CC

2. 제1110회 봉사주회
(그루터기배움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마트 장보기)
- 일시: 9월 22일(화) 오후4시
- 장소: 신도림 테크노마트 B2F 이마트

3. 2026-27년도 부터는 노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오찬주회 회비를 사전등록 받습니다. 사전등록시는 3만원(환불 불가)이며 당일 등록시는 4만원입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전등록 계좌
우리은행 1006-301-579055
(이두원 서울무악로타리클럽)

2026-27년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소개

김진환 (金振煥,Zin Hwan KIM)



아호 : 도연(度延)
소속 : 서울회현로타리클럽
생일 : 1948년 8월 18일
입회 : 2011. 9. 29.
현직 :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학 력
-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 력
- 대통령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

사회활동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한국포렌식학회 회장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대한공증인협회 회장 겸 아시아회장
- GS그룹, 웅진그룹 사외이사
- IGM 「700인 CEO클럽」 회장
- 대한변협 이사,대한상사중재원 부회장
- 경기법조회 회장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한국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총동창회장

로타리 경력
- 서울회현로타리클럽 입회(2011년 9월 29일)
- 서울회현로타리클럽 (2013-14) 회장
- RI 3650지구 2014-15 4지역대표,
- RI 3650지구 2015-25 총재특별대표,법률고문
- RI 3650지구 클럽회장 공로상(2014)
- RI 3650지구 지역대표 공로상(2015)
- RI 3650지구 임원 (총재특별대표) 공로상(2020)
- RI 3650지구 임원 (법률고문) 공로상(2022)
- RI 3650지구 로타리재단기여 공로상(2025)

생일회원(9월)

2일 한동영, 4일 김진홍, 6일 박찬복, 17일(음8.7) 박기호, 19일 권보은, 23일 윤수아, 27일 이재찬

제833호
2026년 9월 8일 화요일

Vol.32 No.3

CREATE LASTING IMPACT

Rotary

週報 毋岳

THE Seoul-Muak ROTARY CLUB BULLETIN

로타리의 목적 Object Of Rotary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북돋는 데 있다.

01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서 넓히고 함양한다.
02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03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 직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04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Of the things we think, say or do

0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0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0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0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제1106회 주회 스케치


이두원 회장의 개회선언


고영섭 총무의 사회


한상민 부위원장의 네가지 표준 낭독


이상우 이사의 로타리 노래 선창


고정림 회원의 생일 축하


유성권 회원의 성금동의

- 국제로타리 회장 올라잉카 하킴 바발롤라
- 재 무 강성태
- 3650지구 총재 김진환
- 멤버십위원장 김유돈
- 총 무 고영섭
- 회 장 이두원
- 로타리재단위원장 유세현
- 부총무 유재연,서정수
- 클럽 트레이너(前 총재) 이순동,김종문
- 봉사프로젝트위원장 한용란
- 사 찰 강희주
- 차기회장 오기호
- 공공이미지위원장 문승현
- 부사찰 이종수,박성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창립 1995년 10월 27일 · R.I. 가입승인 1996년 1월 11일
- 창립회원 163명 · 주회 화요일 12시 서울클럽
- 클럽사무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동문회관 4층

3650지구 7지역 7지역대표 : 김범준(서울한강)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서울한강로타리클럽 | 서울장안로타리클럽 | 서울화산로타리클럽 | 서울호서로타리클럽 | 북서울로타리클럽 | 서울LINK로타리클럽 | 서울풍류로타리클럽 | 서울커리어로타리클럽 | 서울무악 아너스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울타리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주니어로타리위성클럽

■ TEL 02.393.0987 ■ FAX 02.393.0986 ■ E-mail smrc3650@hanmail.net ■ URL http://cafe.daum.net/muakrotary

제1106회 주회

제1106회 주회가 지난 8월 11일(화) 낮 12시,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회에는 이두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 17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고영섭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주회는 이두원 회장의 개회 선언 및 타종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8월 주관위원회인 클럽관리위원회 한상민 부위원장이 네 가지 표준을 낭독했으며, 이상우 이사의 선창으로 로타리 노래를 제창하며 주회의 문을 열었다.

생일 축하 순서에서는 생일을 맞은 고정림 회원에게 회원들의 따뜻한 축하와 덕담이 이어졌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박성수 세무법인 다솔 전략기획본부장이 초청 연사로 나서 「상식의 틀을 깨는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했다.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소개했으며, 강연 후에는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유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찰보고 순서에서는 유성권 회원이 사찰대행으로 성금 모금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날 총 47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이두원 회장의 폐회 선언 및 타종을 끝으로 제1106회 주회가 마무리되었다.

상식의 틀을 깨는 세금이야기


박성수 연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부와 봉사를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회원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강연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일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세법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강의의 큰 제목은 '상식의 틀을 깨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앞의 여섯 가지는 상식적인 선택을 했다가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이고, 뒤의 두 가지는 반대로 세금 폭탄이 예정돼 있었는데 세무적인 판단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일도 확인하고 진행하자. 한 대기업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투자한 끝에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그 영향으로 회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회장님은 그 성과가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증여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에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좋은 뜻으로 주식을 나눠준 것이 나중에는 상속세 부담으로 연결됐고, 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상속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일도 세금 측면에서는 한 번 확인하고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은 특히 조심하자. 한 분이 부동산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본인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했고, 부족한 금액은 아버지에게 출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이자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이니 당연히 공동사업의 비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법에서는 공동사업 자체를 위해 발생한 비용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들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단순히 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을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 있었다면 현물출자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공동사업은 계약서와 지분만 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 방식과 자금의 성격, 그리고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인 전환도 조건을 정확히 봐야 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장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나중으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에서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맞춰 법인의 자본금을 설정했는데, 이후 임차보증금 일부가 반환되면서 순자산가액이 달라졌습니다. 당사자는 그 사실을 세무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법인 전환 당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기대했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바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세무사에게 맡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재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내용을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혜택이 걸려 있는 거래라면 작은 변화 하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수관계인 거래는 무조건 조심하자.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사고팔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0억 원인 부동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40억 원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족끼리니까 싸게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싸게 산 차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거래에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에서는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할 때일수록 '우리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거래하기 전에 시가와 거래가격, 자금의 실제 흐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때는 좋은 일이 위기를 만든다. 한 기업의 CEO가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식은 이미 자녀가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세금이 발생하니 차라리 회사에 돈을 남겨두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단순히 퇴직금을 안 받았으니까 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

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를 포기하고 회사에 이익을 남겼다면 그 과정에서 퇴직금과 증여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받을 돈을 포기했을 뿐인데 세법에서는 다른 거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처럼 금액이 큰 권리를 포기할 때는 단순히 회계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과 지급 구조, 세법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궁지에 몰렸을수록 한 번 더 생각하자. 한 CEO가 배우자와 가정불화가 생기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 지분을 반반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본인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고가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이 재산 이전이 증여로 판단됐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만 재산가액이 크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에는 가정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상당한 세금 부담까지 생긴 겁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빨리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재산을 움직이는 문제라면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세금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입니다. 한 의류업체 회장님이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회사의 담보로 제공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회사에 이전하는 방법을 활용한 겁니다. 당시 회사에는 누적된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회사에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후 회사의 주식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재산을 잃을 위기를 새로운 현금 확보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가 아니라 재산의 소유 구조와 회사의 가치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한 코스닥 상장법인 회장님이 고급 단독주택을 두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택이 여러 채가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중 건물 부분만 아들에게 양도하고 토지는 아버지가 그대로 보유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의 구조를 나누고 주택을 처분하는 시기를 조정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결국 당초에는 상당한 세금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재산의 구조와 이전 시기를 정확하게 검토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편법을 쓴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재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하고, 공동사업이나 법인 전환, 가족 간 거래에서도 내가 생각한 상식과 세법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폭탄이 예정돼 있더라도 미리 구조를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의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산 거래를 할 때는 한 사람의 의견만 듣기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무사마다 경험과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과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큰 결정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06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7	17	0	19.5%

- 집행부(2명) : 이두원, 고영섭
- 클럽관리위원회(4명) : 서정수, 유성권, 정재규, 한상민
- 멤버십위원회(2명) : 김상수, 김성일
- 재단위원회(3명) : 유승흠, 이주호, 황성원
- 봉사프로젝트위원회(4명) : 고정림, 김성훈, 김일윤, 이상우
- 공공이미지위원회(2명) : 이재찬, 최진욱

제1106회 주회 성금 명단 (13명/47만원)

고영섭, 고정림, 김상수, 김성일, 김일윤, 서정수, 유성권, 이두원, 이상우, 이재찬, 이주호, 정재규, 황성원

제1107회 저녁주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관람


저녁주회

제1107회 저녁주회가 지난 8월 25일(화) 오후 5시 30분, 클럽관리위원회(부회장 권보은, 위원장 정재규, 부위원장 한상민)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원들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전시 중인 2026년 한국 근대 거장전 「유영국 – 산은 내 안에 있다」를 관람하며 뜻깊은 문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디오 가이드의 해설을 통해 유영국 화백의 작품 세계와 예술적 삶을 이해하고, 한국 추상미술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전시 관람 후에는 인근 한담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회원 간 정담을 나누고 친교를 다졌다. 이번 저녁주회는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회원 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1107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7	23	0	26.4%

- 집행부(2명) : 이두원, 고영섭
- 클럽관리위원회(6명) : 강희주, 권보은, 김종문, 오기호, 이도원, 정재규
- 멤버십위원회(5명) : 김상수, 김성일, 오현정, 이순동, 장소영
- 로타리재단위원회(0명)
- 봉사프로젝트위원회(5명) : 김성훈, 김일윤, 이상우, 장진갑, 한주이
- 공공이미지위원회(5명) : 이상영, 이재찬, 이종수, 최진욱, 한원일